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355 제출연월일: 2024. 7. 2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5조제1항 중 "수입·판매 부과금, 「광업법」 제87조제1항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"을 "수입·판매 부과금"으로 한다.

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87조(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	<삭	제>			
부과금)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					
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					
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					
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					
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					
<u>징수할 수 있다.</u>					
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					
대상자, 부과 기준, 징수 방법,					
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					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				
<u>정한다.</u>					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					
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					
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					
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					
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					
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					
산금을 징수한다.					
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					
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					
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					
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					
독촉하고, 그 지정 기간 내에도					

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
제88조(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)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7
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
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부과금의 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·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 을 임명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 계직원에 대하여는 「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<삭 제>

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.